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12월 12일

제안자 : 이범윤 의원의외

□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객실사용료가 현대화된 시설 대비 사용자 부담액 기준이 낮게 책정된바,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열악한 교육 재정 확보 도모

□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39조의 별표 4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의 객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원)

구 분	교직원 및 교직원가족	공공단체 및 기타	비 고
11평형	20,000	30,000	○ 1일은 당일 15:00부터 익일 12:00를 기준으로 함
22평형	30,000	40,000	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개정안 제39조의 별표 4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의 객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원)

구 분	교직원 및 교직원가족	공공단체 및 기타	비 고
11평형	20,000	30,000	○ 1일은 당일 15:00부터 익일 12:00를 기준으로 함
22평형	30,000	40,000	